

발간등록번호

71-3780000-000035-01

지역사회복지위원의 역할

일시 : 2007. 7. 11. (수) 13:40 ~ 16:00

장소 : 성남시청 대회의실

주최 : 성남시

주관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성남시

성남시행정자료실



MB009300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위원의 역할



성 남 시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진행순서

구 분		내 용
13:40 ~14:00	20'	주민혁신 8대서비스 안내 영상 소개
13:40~14:00		등 록
14:00~14:10	10'	개 회 - 인사말씀 :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14:10~15:40	90'	강 연 - 주제 : 복지위원의 역할 - 강사 : 이기주(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5:40~16:00	20'	질 의 응 답
16:00		폐 회

목 차

I. 복지위원 운영 • 4

① 복지위원 개요 • 5

II. 긴급지원제도 • 7

① 긴급지원의 개요 • 8

②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 10

③ 긴급지원의 실시 • 15

④ 사후조사 • 18

⑤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 19

⑥ 우리 시 추진계획 • 23

III. 사회복지시설 현황 • 27

IV. 주 제 강 연 • 43

① 민·관협력시대의 복지위원의 역할 • 44

I. 복지위원 운영

I

복지위원 개요

1. 운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복지위원)
- 성남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06. 9. 25제정)

2. 개 요

- 정 수 : 45개동 115명 (동별로 2인 이상 4인 이내로 구성)
- 위촉절차 :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
 - ▶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 임 기 : 3년(연임가능)

3. 복지위원 임무

- 시·구와의 협력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파악 및 의견 수렴, 시·구에 제안
-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복지대상자) 발굴 및 선도·상담

※ 복지위원 상담일지 [별첨]

4. 기타사항

-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복지위원 직무 수행 향상 도모
 - 교육시기 : 년 1회 이상
 - 교육방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탁 실시
 - 교육내용 : 복지위원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복지위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복지위원 활동 우수사례를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
 - 긴급지원 유공 복지위원 표창 상신

Ⅱ. 긴급지원사업

I 긴급지원의 개요

1. 추진배경

-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음.
-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조기발견과 우선보호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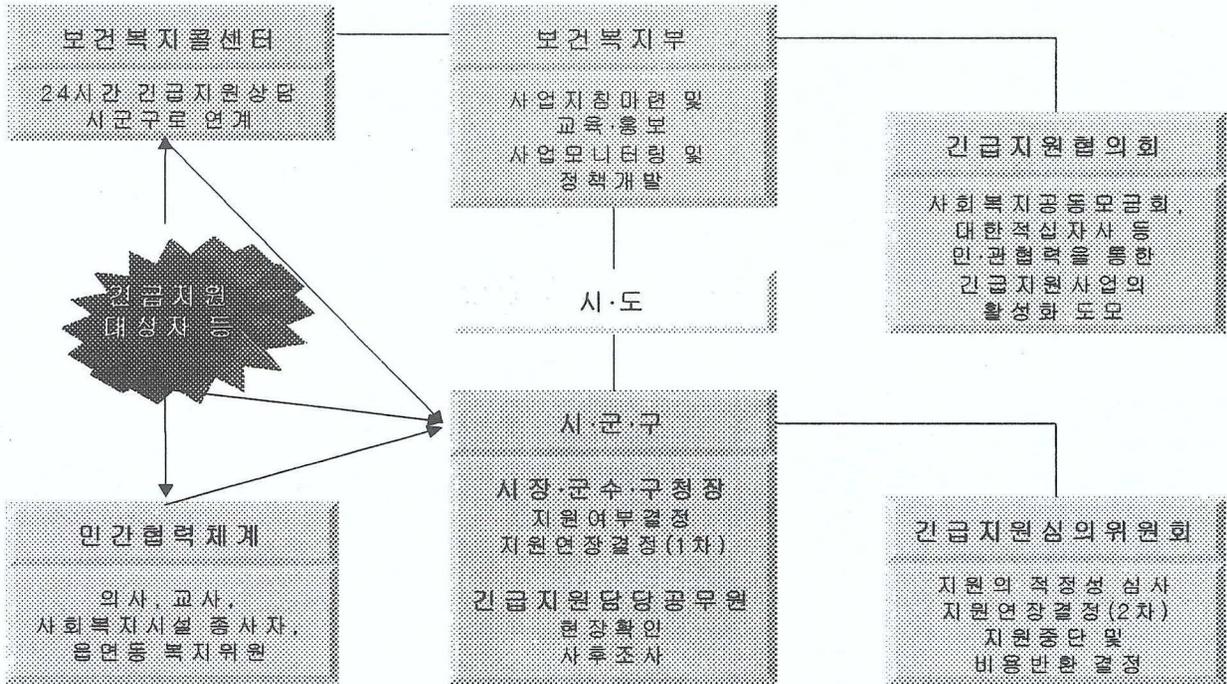
2. 기본원칙

-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 나. 단기 지원 원칙
- 다.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라. 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 다.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의료지원의 경우 개인단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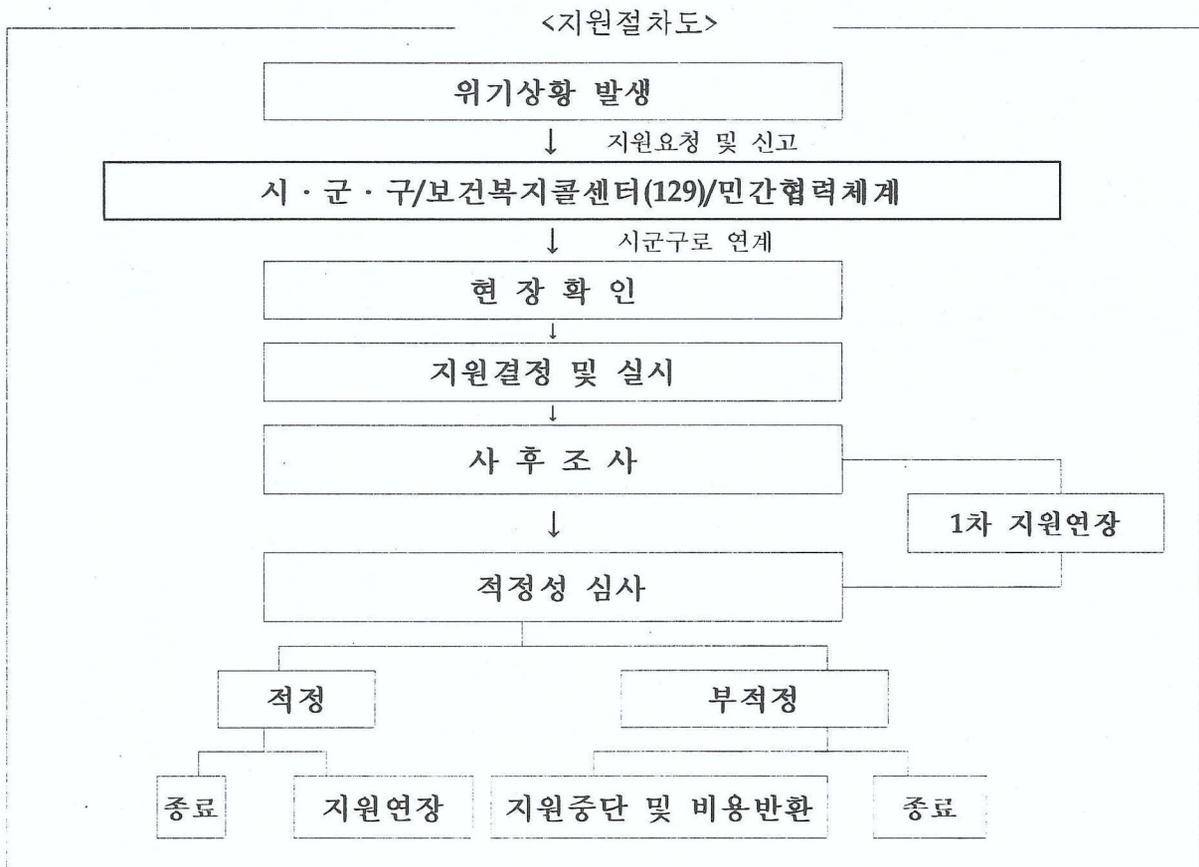
3. 지원의 종류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 * 4인가구 기준 1,170천원(2006.11.7일 변경)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1개월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난방비: 6만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연체된 전기요금 : 50만원이내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없음

4. 긴급지원체계도



5. 긴급지원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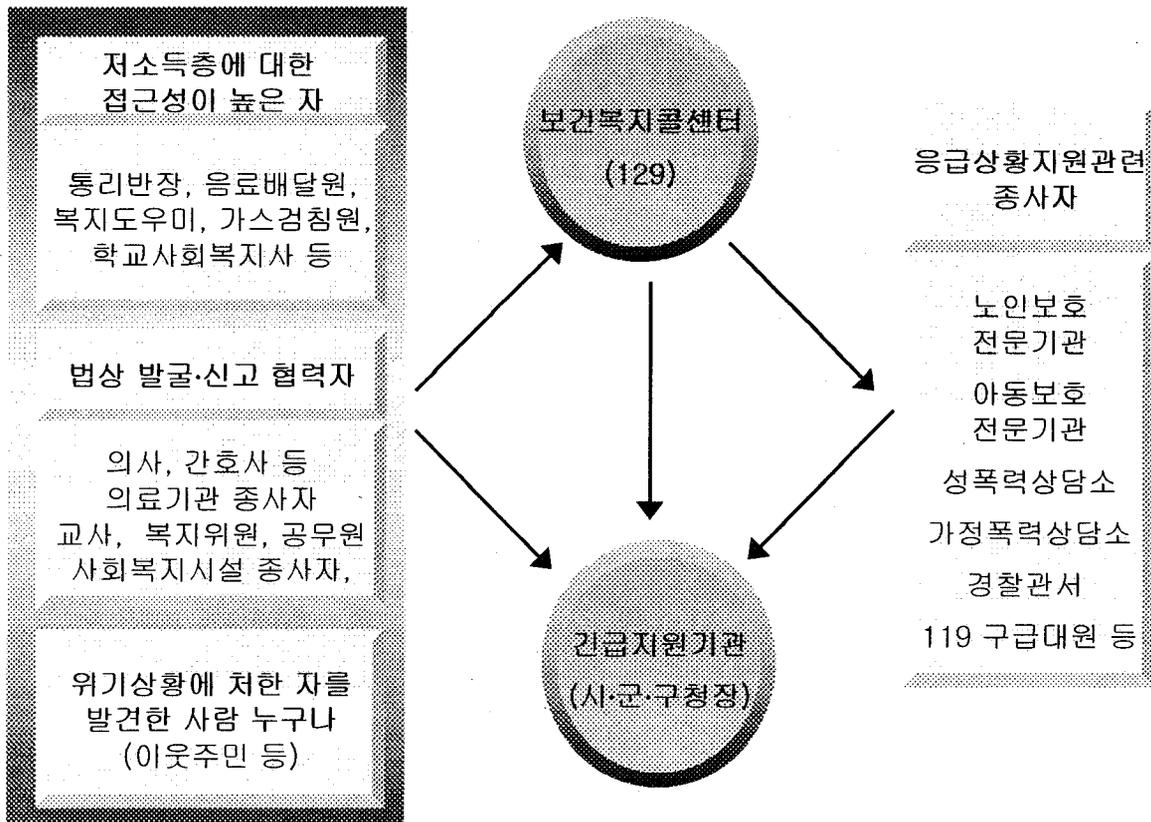
II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 신고 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사자
- 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
-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에 의하여 위촉된 복지위원
- 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발굴 체계도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 긴급지원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자
- ② 사망
- ③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④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

※ “실업”은 제외되나 다만, 사업실패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하고 채무독촉을 받는 등 생계유지가 관련한 경우 인정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① 노인학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②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① 가구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마.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포함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 노숙인은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

□ 현장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1) 현장확인시 점검사항

(가)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여부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여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서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하여 긴급생계급여 등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다) 소득 및 재산

-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파악

-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차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급적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
- (2) 현장확인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 ①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된 자 방문
 - 의료지원을 요청한 자 및 의료지원대상자로 신고된 자가 의료기관에 기 입원중인 경우에는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의 소견 청취
- ②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된 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되 통·반장, 이웃주민 등의 진술청취
- ③ 지원요청자 또는 신고된 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서 상에 반드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함

(나) 절차

- 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 활용)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 ②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현장확인서 작성
- ③ 현장확인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현장확인 절차 완료 체크

□ 지원단위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 (1) 기본원칙 :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 생계지원, 주거지원,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은 가구를 단위로 지원
 - 의료지원은 개인을 단위로 지원
- (2) 가구의 범위
- ① 가구에 포함되는 자
 - 원 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예 외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자
 - ※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구성원에 포함
 - 구급시설에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 수급자.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③ 외국인
- 원칙
 - 외국인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을 기준으로 지원
 - 예외적 포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 중에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후 이혼하였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Ⅲ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나. 지원방법 : 지원결정 후 계좌로 입금 원칙

다. 지원기준 (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7인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액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

라.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원칙

※ 시장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 1월의 연장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의 범위 안에서 지원 연장 가능

2. 의료지원

가. 지원대상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나. 방법 및 절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다.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지원

라. 지원횟수 : 1회 지원 원칙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

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3. 주거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나. 방법 및 절차 : 임시거소를 제공, 임시거소 확보·제공하기 곤
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다.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268,182	447,865	590,196
중 소 도 시	176,353	294,511	388,106
농 어 촌	101,263	169,110	222,854

라.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원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 절차와 동일)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자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라. 지원기간 : 1개월 지원 원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 절차와 동일)

5. 그 밖의 지원

가. 종류

-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 해산비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장제비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나. 지원대상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자로서 추가적인 지원수요가 발생한 자

- 연료비 : 동절기(10~3월)
- 장제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망
- 해산비 : 긴급지원대상자의 출산(사산 포함)

마. 지원기준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지원금액	6만원	50만원	50만원

바. 지원기간

- (1) 연료비 : 1개월 지원 원칙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생계비 지원 절차와 동일)
- (2) 장제비, 해산비 : 1회 지원

6.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가. 지원유형

- (1) 상담·정보제공 등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
- (2)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IV 사 후 조 사

1. 사후조사의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으로 연계 보호하기 위함

2. 사후조사의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3. 사후조사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조사
 - 다만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 1월 이내에 완료하지 않을 수 있음

V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적정성 심사 목적 : 건전한 재정집행을 담보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적정성 심사 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적정성 심사 대상 : 지원대상 전체(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제외)

□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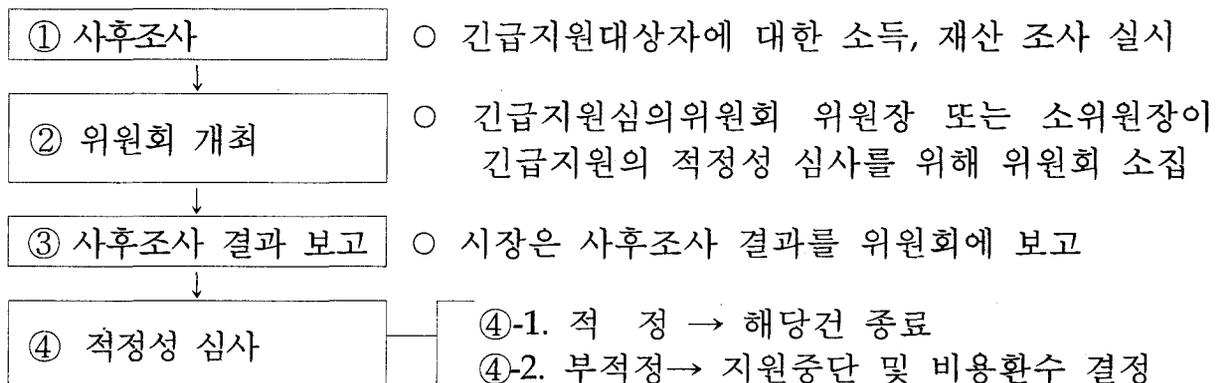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566,700	954,740	1,264,730	1,567,200	1,827,040	2,092,520

○ 재산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9,500	7,750	7,250

※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일 것

□ 적정성 심사 절차



2. 지원연장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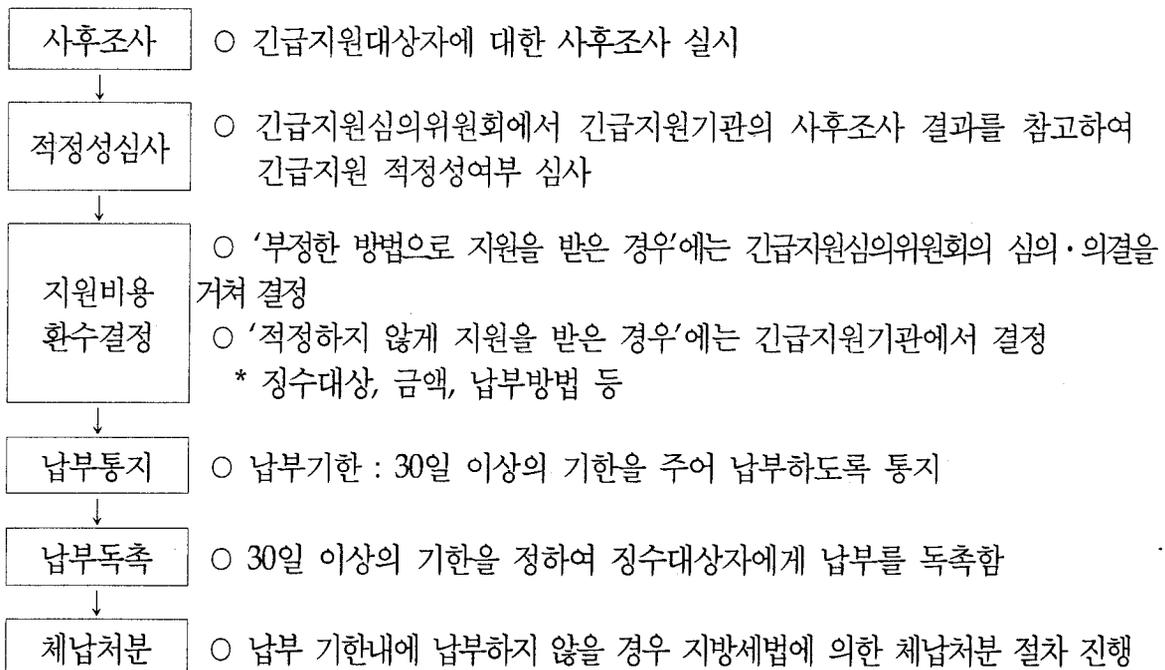
구 분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연계, 그밖의 지원	의료지원
연 장 사 유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의료지원 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 발생으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장 결정기한	긴급지원 종료 3일전	1회 지원 후
연장 결정주체 (연장기간/횟수)	시장 (1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추가 2월)	긴급지원심의위원회(1회)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가. 지원비용 환수대상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아니하였으나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 (3)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나. 지원비용 환수절차



※ 이의신청 : 비용반환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사후 연계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으로의 연계

5. 거주지 변경에 따른 관리

가. 전출 : 건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이송

(가구원 일부 전출의 경우 서류 사본 이송)

나. 전입 : 전 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지원 또는 실시하려던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

※ 현장확인

여 백

VI 우리 시 추진계획

□ 운영체계 확립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
 - 총괄지휘 : 주민생활지원과장
 - 추진반 : 4명

구 분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비 고
			주간	야간	
시청	서비스연계팀	김현옥	729-2843	729-2220-2 보건복지콜센터 (129)	
수정구청	사회복지팀	백미홍	729-5212		
중원구청	사회복지팀	김정숙	729-6213		
분당구청	사회복지팀	이연희	729-7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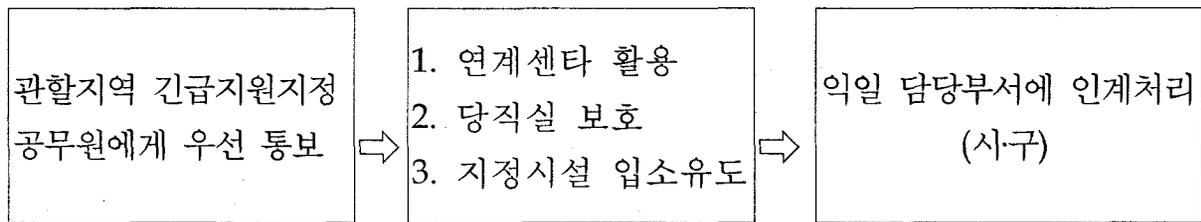
□ 업무의 연계성 확보

담당부서	추진업무	내 용	조 치
시청	◦ 사업 전반 수행	◦ 사업비 집행	◦ 결정통보(구, 지원대상)
	◦ 지원연장결정	◦ 1차-시장 결정 ◦ 2차-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 지원종료 3일전 통보
	◦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적정성 여부 결정	◦ 적 정 : 종료, 연장 ◦ 부적정 : 비용반환
	◦ 보건복지콜센터 운영	◦ 콜센터 이관 민원 처리	◦ 처리결과 송신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지정 운영	◦ 필요시 입소조치
	◦ 실적보고	◦ 시·구 추진상황	◦ 도 보고
구청	◦ 현장확인	◦ 관할지역(콜센터) 민원	◦ 8시간 이내 실시
	◦ 사후조사	◦ 소득, 재산 등 조사결과 확인 - 지원 적정 여부 판단 - 지원연장·중지여부 요청	◦ 지원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료후 즉시 보고
	◦ 주거지원 장소 확보	◦ 개인가정위탁, 무보증월세, 하숙, 여관 등	◦ 지역여건 감안 적의 지정
	◦ 실적보고	◦ 지원요청 및 현장확인 건수	◦ 매월 말
	◦ 2차 연장 결정 요청	◦ 심의자료 작성	◦ 지원종료 15일 전 제출
동사무소	◦ 대상자 발굴	◦ 복지위원, 통·반장등 활용	
	◦ 현장확인시 협조	◦ 정보제공 등	

※ 사후조사 결과 수급자 책정 등을 요하는 사항은 동 담당자 연계하여 지속 관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시 대처방안

- 긴급보호 체계유지



※ 당직실에 긴급지원 전화민원 접수 인계대장 비치 활용

○ 긴급보호시설 지정

대 상	입 소 요 건	시설명	시설장	위 치	연 락 처	
					시 설	연계센터
노 인	학대,유기,방임	정성노인의집	김애영	석운동 61-19	705-3973	1588-9222
아 동	학대,유기,방임	소망재활원	이종윤	금광2동 3957	741-3001	1391
피해여성	가정폭력,성폭력	성남여성의전화	이문자	비공개	751-2050	1366

※ 실직자, 노숙인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연계센터 활용

※ 긴급지원 관련 유의사항

□ 위기상황 발생시점에 따른 연계 구분

-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경과된 건
 - 기초생활보장 등 관련 담당자에게 연계
-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건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연계

□ 의료지원 관련사항

1. 의료지원의 대상이 되는 치료·검사 서비스

- 지원요청일부터 발생한 치료·검사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지원요청자의 상황이 매우 곤란하여 기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 이 경우에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으로 봄
- 긴급지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

- 희귀·난치성 질환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응급환자(응급실에서의 진료)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면 그 지원만으로는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라도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

○ 민간보험으로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긴급지원대상이 아니나 본인이 소명하지 않는다면 확인 불가능한 경우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불이익조치를 취하게 됨을 고지하고 본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함

2. 거주지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긴급지원기관

- 지원요청자의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현장확인 방법

- 지원요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가족, 이웃주민 등의 소견 청취
- 지원요청자가 입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얻어 의사 소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확보

3. 의료지원 결정시 추가적 고려사항

○ 시군구 보건소에 의뢰하여 진단서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요청인이 실제로 입원진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는지를 판정하기 위함임

Ⅲ. 사회복지시설 현황

I

종합사회복지관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이상구	748-7151	745-065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957	(사북) 월드비전
중탑종합사회복지관	문교정	706-0167	706-4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1단지내	(사북) 한국복지재단
한솔종합사회복지관	선경석	716-4215	717-19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01 한솔마을 7단지내	(사북)승가원
청솔종합사회복지관	김옥규	714-6333	714-6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청솔마을 6단지내	(사북)자선단
분당종합사회복지관	조수경	714-1234	714-12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0	(사북) 분당사회관

II

다목적복지회관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상대원1동 복지회관	정현정	747-3038	731-568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32	(사)새날복지회
상대원2동 제1복지회관	이숙희	733-3534	746-434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4672	생빛교회
상대원2동 제2복지회관	장원정	748-7500	749-46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2996-35	대원교회
상대원3동 복지회관	최종건	735-9600	731-03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70	(사)한국참사랑복지회
성남동 제2복지회관	서덕석	756-9479	752-947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67	(사)성남푸드뱅크
은행1동 복지회관	김유현	733-6914	712-956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2021	(사복)성남YMCA
은행2동 제1복지회관	고재경	733-3260	744-27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597	(사복)가나안복지재단
은행2동 제2복지회관	김현의	731-0890	746-089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034	산자교회
은행2동 제3복지회관	이민실	731-4842	731-461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722-4	개인
중동 제1복지회관	이혜원	734-1400	734-81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374-7	개인
중동 제2복지회관	홍정자	741-9544	735-04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39	(사복)성기는사람들
하대원동 복지회관	정중헌	755-8400	755-84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5-8	영도교회

Ⅲ

사회복지단체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이대엽 이금재	721-0822	721-08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 동호빌딩 4층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상구	748-7151	745-0652	중원구 금광2동 2957번지 성남종합사회복지관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조남숙	747-5036	747-54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973 연안빌딩 603	
성남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범용	734-3730	734-38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8번지 2층	
(사)경원사회복지회	한영애	755-2526~ 7	758-47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6 우일프라자 502호	
(사)디딤돌	민재기	741-0120	732-0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사)정을심는복지회	정태자	757-0177	757-620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973 연안빌딩 603	
(사)새날복지회	안은숙	745-9808	745-888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57번지 3층	
(사)성남푸드뱅크	서덕석	757-1377	752-947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67	
(사)성남YWCA	조남덕	701-2503	703-275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601-4	
(사)한국참사랑복지회	김광배	735-9600	731-03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70	
(사복)가나안복지재단	오인호	707-0547	707-05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0-2	
(사복)굿네이버스 경기동부지부	김정미	758-1385	721-388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사복)기아대책	홍정자	747-9544	735-04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39	
(사복)승가원	서정문	716-4215	717-19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2동 101 한솔마을 7단지내	
(사복)월드비전	김선도	748-7151	745-06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광2동 2957	
(사복)자선단	김철주	714-6333	714-6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청솔마을 6단지내	
(사복)한국복지재단	김상원	706-0167	706-4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65 목련마을 1단지내	
(사)성남여성의 전화	장순화	751-2050	751-205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 동호빌딩 6층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남시지구협의회	김옥순	759-5082	759-505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92번지	
성남YMCA	이용원	715-6016	712-9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3 금탑프라자 4층	

IV

장애인복지기관 및 시설

기관명	대표명	전화	팩스	주소	비고
(사)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성남시지회	백세균	732-6884	748-676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8	이용시설
가나안근로복지관	하상준	707-0546	707-054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0-2	직업재활
다사랑마을	최상구	754-6128	753-063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81-2	생활시설 (지체장애)
무지개동산예가원	정 권	705-2366	708-722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3	생활시설 (정신지체)
말아톤주간보호센터	이문범	717-9476	717-945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31-1 용마트원프라자 8동 5005호	이용시설
사랑의학교	이호희	780-9591	780-9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할렐루야교회	이용시설 (주간보호)
셋별재활원	이수경	759-4875	759-48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상대원동 SK테크노파크메가센터B101	직업재활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정일상	749-1444	732-576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2 1층	이용시설
성남시수화통역센터	한명희	747-8572	748-27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2	이용시설
성남시장장애인복합사업장	이윤숙	777-9041	777-904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13-14 시콕스타워210호	직업재활
성남시장장애인재활작업장	김만수	733-0072	745-004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2	이용시설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김만수	733-3322	733-616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산13-1	이용시설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성남작은예수의집	김현경	753-3327	756-893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39	생활시설 (정신지체)
성남혜은학교	대재희	734-8474	733-897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92번지	장애인학교
성은학교	이명희	706-6983	704-108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72	장애인학교
소망재활원	이종윤	741-3001	736-30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957	생활시설 (중증장애)
에덴의집	오란희	733-5137	733-513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2353	생활시설 (정신지체)
열린사랑의집	이선영	734-3309	735-340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136-2	생활시설 (정신지체)
우리공동체	최영희	733-5045	733-025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125-10	생활시설 (정신지체)
임마누엘의집	김성애	702-4474	706-274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86번지	생활시설
참사랑의집	김철환	734-2777	722-015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9-4	생활시설 (정신지체)
한우리주단지보호센터	이선화	733-9944	733-966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1	이용시설
희망이네집	홍태석	744-5205	744-5205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81-2 로알타운 가/301	공동생활가정
아름드리그룹홈	문규영	532-8142	-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1-51	공동생활가정

V

장애인단체

기관명	대표명	전화	팩스	주소	비고
(사)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성남시지회	홍순태	744-7066	732-439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2	
(사)한국농아인협회 성남시지부	한명희	747-8572	748-273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1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성남시지부	정일상	743-6430	741-09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1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성남시지부	유영준	745-3383	745-338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2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성남시지부	정기영	747-5414	731-541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92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남시지회	김태술	731-3401	731-34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1	
성남시장래인연합회	김태술	731-3401	731-340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64-1	

VI

지역아동센터

기관명	대표명	전화	팩스	주소	운영주체
해맞이학교	민재기	756-003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사)디딤돌
새하늘교실 지역아동센터	민재기	741-014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사)디딤돌
아이들천국 지역아동센터	유준수	754-8428	758-6408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865번지 3층	(사)부스리기 사랑나눔회성남3지부
신나는신나는집지역아동센터	곽상화	741-1448	732-144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891번지 고려주택 지하	(사)부스리기 사랑나눔회성남2지부
민들레 지역아동센터	김현의	731-0890	746-089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034	재)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유지재단소속산자교회
초원교실 지역아동센터	한명숙	712-0585	712-058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9 한국프라자 302호	
성남꿈나무학교	정경미	743-4416	743-44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574	(사)공동육아(법인)
성남동 지역아동센터	조해정	754-947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376	(사)성남푸드뱅크(법인)
즐거운학교	정정옥	745-9809	745-888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57 3층	(사)새날아동상담 교육센터
중동, 성남동 푸른학교	유정희	755-6186	721-443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638	서로돕고함께나누는 푸른학교(단체)
수진동푸른학교	박미경	755-736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2929(3층)	"
태평동푸른학교	김지숙	751-543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69-1	"
금광동푸른학교	김은정	734-448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437	"
상대원동푸른학교	김미경	734-669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2541	"
정자동푸른학교	김영희	718-0887	718-08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60 양지프라자3층	"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금곡동푸른학교	신은미	716-47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 902-104	"
신흥동푸른학교	박지선	744-605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592(지)	"
중탑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문교정	706-0167	706-45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165	한국복지재단 (법인)
한솔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선경석	716-4216	717-19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사)송가원(법인)
성남동복지관 방과후교실	이상구	748-715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957	월드비전(법인)
청솔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김옥규	714-6333	714-6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번지	(사북)자선단
하은지역아동센터	방인수	741-8975	741-897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82-2	개인(하은교회)
새소망공부방	성모	754-222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86(4층)	대한기독교감리회 (법인)
몬테소리공부방	김현근	757-517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2644	
성남꿈나무학교	정경미	743-4416	743-441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574	
두란노지역아동센터	유영미	746-6976	746-69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1628	개인
구세군새성남 지역아동센터	김규한	731-6171	731-61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3748-42	재대한 구세군 유지재단
지역사회스쿨	최용희	745-088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3405-2 4층	
신흥1동복지관지역 아동센터	오성심	754-0754	722-01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4900	
야긴과보아즈 지역아동센터	이봉래	712-5055	712-05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4-4 하나빌딩 3층	
꿈꾸는땅 지역아동센터	이광섭	715-3075	715-307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3-1 분당프라자801	

VII

아동복지기관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동방사회복지회 성남아동상담소	조남숙	747-5036	747-545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4402	이용시설
새날아동상담 교육센터	정정옥	745-9808	745-888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680 2층	이용시설
성남시보육정보센터	박민정	708-3411	708-38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10 여성문화회관3층	이용시설
성남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연합회	곽삼화	741-1448	732-144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891 /지층 2호	이용시설
양친회아동상담소	유형진	741-3001	736-301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3956	이용시설
홀트아동복지회 성남사무소	이진희	751-3110	721-31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580	이용시설

Ⅷ

아동 및 청소년 시설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사복)은행골우리집1	김광수	732-1391	732-139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은행주공APT 111-702	생활시설
(사복)은행골우리집2	김태식	732-1391	732-139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925번지	생활시설
경기성남아동 전문보호기관	김정미	758-1385	721-388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인성빌딩 3층	이용시설
만남의집	이명희	747-0180	747-018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01	생활시설
성남시청소년쉼터	김은영	758-1213	758-926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3943 시온101호	생활시설
성남시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송현석	781-6182	781-615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12-5	이용시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오세찬	740-5200	740-529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466	이용시설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	오세찬	733-9155	733-927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870 / 6층	이용시설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이용원	717-2000	712-959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1-3 금탑프라자 4층	이용시설
작은사랑의집	표완규	752-4004	745-400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925	생활시설
중동청소년공부방	홍정자	749-374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39번지	이용시설
천사의집	채은숙	752-9970	751-418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39-2	생활시설
상대원3동 청소년공부방	정정옥	742-1955	745-888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26번지	이용시설
책마을 어린이운고	장정심	731-706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959번지	이용시설
디딩돌 학교	조주현	755-4080	755-418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3517번지	학교밖청소년 배움공동
빈체시오의집 (그룹홈)	이희권	746-1377	751-889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906번지	
안나의집	박인국	757-6336	751-905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2번지	청소년쉼터
민들레그룹홈	김현의	731-089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은행주공APT116-107	

IX

노인시설

기관명	대표명	전화	팩스	주소	비고
노인자원봉사센터	김옥규	714-6333	714-6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이용시설
다살림재가 노인복지센터	강영수	713-9002	713-905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01-5	가정봉사
부처님마을자광원	김정자	759-5320	759-420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3	양로
서울시니어스분당타워	오덕만	712-584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97-2	유료주택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김영진	747-1886	731-03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70	가정봉사
성남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정호	735-9600	731-03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70	주간보호 (실비)
수노을노인 주간보호센터	정정순	731-3393	741-451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870	주간보호 (실비)
수정노인복지센터	임일환	752-3366	758-55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6	종합센터
수정치매단기보호센터	임일환	752-3366	758-55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6	단기보호
수정노인복지회관	정정순	731-3393	741-451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8	종합센터
수정치매주간보호센터	임일환	752-3366	758-554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6	주간보호 (실비)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시온의집	윤승호	734-5401	735-540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915-1	실비요양
석운무료전문요양원	엄종숙	709-2340	709-238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60-94	무료요양
수진재가노인복지센터	변은자	751-1937	757-477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661	가정봉사원
서로사랑노인복지센터	이성원	747-9544	735-040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1539	가정봉사원
실버릿지그랜드	임은순	723-5812	723-581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07	유료요양
은빛사랑채상대원1동 주간보호센터	정현정	747-3038	731-568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1336	주간보호
은빛사랑채한솔치매 노인주간보호센터	선경석	716-4215	717-19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주간보호
인보의집	변은자	751-1937	757-477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661	무료양로
정성노인의집	김애영	705-3973	708-59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61-19	무료양로
청솔주간보호센터	김옥규	714-6333	714-633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주간보호 (실비)
피더하우스	김영진	782-277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9	유료주택
YMCA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장창현	736-4175	733-3512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2021	가정봉사원
YWCA 은학의집	박인선	707-8790	707-879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3	주간보호

X

여성시설

기관명	대표명	전화	팩스	주소	비고
성남시여성문화회관	-	729-5772	709-418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탑로 106	이용시설
여성복지회관	-	745-3071	745-307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0번지	이용시설
성남 여성의전화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센터	이문자	751-2050	751-205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 동호빌딩 6층	이용시설
성남 여성의전화 부설 성남성폭력상담소	우승혜	751-2050	751-205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 동호빌딩 6층	이용시설
성남여성의전화	장순화	751-2050	751-205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 동호빌딩 6층	이용시설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석춘지	718-6696	719-66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58 미도프라자 6층	이용시설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가정폭력상담소	이현혜	755-2526	758-47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6 우일프라자 507	이용시설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영애	755-2526	758-47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6 우일프라자 507	이용시설

XI

노숙인쉼터 및 관련시설

기관명	대표명	전화	팩스	주소	비고
성남 내일을 여는집	임승철	745-935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269번지	노숙자쉼터
성남 내일을 여는집 노숙인 상담센터	임승철	751-1970	751-197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2501번지	노숙자상담
하사항의집	이병국	755-0343	754-027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동 3375	노숙자쉼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이상린	756-2143	757-809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11	외국인노동자쉼터
안나의집	박인국	757-6336	722-64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2	노숙자쉼터

XII

기 타

기 관 명	대표명	전 화	팩 스	주 소	비 고
분당구방문보건센터	송미숙	702-5054	704-50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3층	
수정구방문보건센터	이금재	745-6645	745-6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2177, 3층	
중원구방문보건센터	원종순	733-7920	733-7923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2층	
성남자활후견기관	김덕자	741-0120	732-012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79-1	
성남만남자활후견기관	양요순	748-3500	743-657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901-1	
성남시알코올상담센터	송진우	751-2768	751-276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612번지 2층	
성남시정신보건센터	권의정	754-3220	754-320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2193번지 금성빌딩 3층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이선희	755-9327	755-53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7번지 3층	
성남시보육정보센터	박민정	721-1640	756-388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67번지 4층	
성남지역사회교육협의회	우성진	707-8377	707-84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7-6 골든프라자 501호	
아름다운 가게	이명희	703-10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4 KT분당지사 1층	

IV. 주제강연

민·관협력시대의 복지위원의 역할

이기주교수(충북대학교)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다 -칼 포퍼-

1. 지금은 민관협력시대이다.

가. 국정관리(協治 · governance)로 권력의 축 이동

- ① 국가(정부)독점에서 국가(정부)-시장(기업)-시민사회(NGO)의 관계중심으로
- ② 다양한 자기이익의 관점에서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 ③ 수직적 관료조직형태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로

나. 지배·통제중심에서 고객·서비스중심으로

- ① 국민에서 시민(市民)개념으로
- ② 대리인-주인관계의 변화
- ③ 시혜자-수혜자관계에서 제공자-고객관계로

다. 공익창출을 위한 협력관계로

- ① 공공문제를 공유(共有 · shared) 문제로의 전환필요성강조
- ② 효험성있는 서비스전달체계에의 관심
- ③ 정부는 방향잡고 시민은 노 젓고

마. 자치(自治)의 시대에 복지(福祉)를 위하여

- ①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 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 ③ 뜻을 모아 선(善)을 이루고

2. 사회복지(社會福利)는 인간(人類)사회의 비(非)복지 · 역(逆)복지(逆福利)현상을 극복하는 일이다.

가. 균형잡힌 삶의 영역을 목표로

- ① 영적 충만감
- ② 정신적 안정감
- ③ 육체적 건강함
- ④ 물질적 풍요로움

나. 유기적인 생활주기를 목표로

- ① 유아·아동기 보호
- ② 청소년기 육성
- ③ 장년기 활약
- ④ 노년기 안락

다. 사회적 장애 · 결핍 · 박탈 · 욕구 · 소외를 벗어나는 길을 찾아서

- ① 개인적 삶의 객관적 · 주관적 조건을 향상(up-level)
- ② 사회제도의 인간적(humane) 운용에 힘을 쏟기(up-grade)

3. 복지위원은 지역사회복지현장을 돕는 핵심적·실천적 멘토(mentor)이다.

가. 분석가 : 복지실태파악

나. 상담가 : 선도·보호·연결

다. 협력가 : 민관협력의 가교건설

4. 남을 돕는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가. 도움의 의미

- ① 타인의 결핍이나 장애적 요인 등에 동원할 수 있는 자신의 자원을 제공하는 일.
- ② 돕는 행위는 인간의 전체생활(영적·정신적·육체적·물질적) 영역과 전생애주기(유아아동·청소년·장년·노년기)간에 총체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됨.
- ③ 돕는 일과 도움을 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발생함.
- ④ 사회속에 산다는 것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며 사회적 관계는 도움을 주고받는 일임.

나. 돕는 행위의 이상과 현실

- ① 남의 처지와 고통을 이해하고 풀어주는 일은 인도주의의

핵심임

② 돕는 전문직(helping professions)은 성숙한 소명의식(callings)과

전문적(professional)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함

③ 돕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이상과 현실의 간격(gap)은 항상 있기 마련임.

④ 도움의 이상과 현실사이의 간격은 인간적 유대감으로 극복되어야 함.

5. 복지활동은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는 일이다

관계를 맺는 일은 상담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놓고 클라이언트와 더불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도움의 과정이다.

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클라이언트 자신의 것임

② 인간문제는 다면적(multi-)이며 복잡성(complex)을 띠

③ 문제의 속성은 표피적 행동과 심층적 욕구로 구성되어있음

나. 상담자로서의 위치와 역할

① 상담자는 돕는 전문직임

② 상담자에게 있어 문제는 풀어내기 위한 이슈임

③ 상담자는 클라이언트와 문제사이의 교량역할을 수행하는 멘토(mentor)임

④ 최고의 지역사회복지위원은 지역사회를 스스로 돕는 사람이다

다. 도움의 과정

- ① 인간문제를 해결은 이해(understanding)의 심리학·사회학·정치경제학에 기초해야함
- ② 상담의 과정은 '또 다른' 심리사회적 일치감을 필요로 함
- ③ 복지의 도움체계는 상담의 전문성과 도움의 조직화((helping -organizations)를 통해 구성됨

6. 바람직한 민·관협력관계는 상호역할이해에서 비롯된다.

가. 상호역할이해

- ① 민은 관에 대해서, 관은 민에 대해서 고유의 존재이유에 대해 바로 알자
- ② 상대방(조직)에 대한 객관적 사실(역할·능력·여건)에 귀 기울이자
- ③ 조직교육·학습·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자

나. 상호이해를 위한 사전(事前) 인식사항들

- ① 공동선(共同善·common good)은 공동노력으로 가능하다는 것
- ② 문제(갈등)는 항상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는 사실
- ③ (민간≠공공이익, 정부=공공이익창출) 또는 (민간= 시민대변자, 정부는 공공의 적)이라는 등식은 무조건 폐기해야 하다는 것
- ④ 최적수준의 협력은 민간이든 정부이든 관리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것. 그 역량있는 관리자가 협력사업의 진정한 CEO라는 점.
- ⑤ 공공의 만남(public encounter)의 교류장을 점차 확장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며 만남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당신의 감성코너)**

*경상도 사람과 함경도 사람이 다투고 있었다. 사연인즉 이렇다. 경상도 사람이 뭔가를 가리키며 함경도 사람에게 “이게 뭐꼬?” 물었다. 함경도 사람이 질문에 답하려는데 ‘뭐꼬’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이렇게 말했다. “뭐꼬가 무시기?”. 그러자 경상도 사람이 질문에 답하려는데 ‘무시기’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렇게 되물었다. “무시기가 뭐꼬?” 두 사람은 계속 반복하며 서로 되묻다가 신경질 난다며 먹살 잡고 싸우고 있었다.

*고양이 선생님이 어느 날 동료 고양이 선생님과 학급운영에 관해 상의하고 있었다.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 학급에 두 토끼학생들이 있는데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불평스러운 듯 말하였다. “그들은 말야.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동료교사가 관심을 표명하며 물어오자 그는 힘을 얻은 듯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 “어제 말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쥐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정말 재미있는 강의를 하였거든. 그런데 누구도 이런 유익한 강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란 말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정말...”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무슨 교육을 하겠어 !”

*크리스마스 날, 예수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축하송이 울려 퍼지는 교회당 밖에 한 흑인아이가 울고 있었다.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 한 사람이 허기진 표정으로 아이에게 물었다. 왜 교회 안에 들어가 즐겁게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울고 있냐고. 그 아이가 대답했다. “흑인이라고 교회에서 쫓겨 났어요” 이번에는 흑인아이가 허름한 아저씨에게 의아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저씨는 누군데, 왜 교회에 안들어가고 여기서 서성거리고 계세요?” 그 아저씨는 슬픈 표정으로 눈을 땅에 떨구며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예수(Jesus)란다. 허름하다고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푸시킨-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sisting of 20 lines.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rectangular border.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rectangular border.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ained within a rectangular border.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메 모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메 모

A large rectangular area containing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typical of a memo or lined paper.

지역사회복지위원의 역할

발행일 : 2007. 7. 4.

발행처 :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0~3)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031-721-0822~3)

발행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양 경 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 중 완
공 동 위 원 장 이 금 재

인쇄처 : 신흥인쇄사 (031-748-0941)